

第11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1號(附錄)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 1. 都市計劃用度地區(美觀地區)變更決定(案) 意見聽取 1面
- 2. 淸進區域 都心再開發 區域變更(案) 意見聽取 6面
- 3.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1面
- 4.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4面

1.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I. 안건명 :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II.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 조서

1. 역사문화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사직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제3종)	교북동1-12~ 사직동1-48	22,800	950	양측 12	건고109 (76.7.19)	-전체:독립문 ~체부동 -면적:36,000㎡ -연장:1,500m
변경		사직로	일반 미관지구	교북동1-12~ 사직동1-48	22,800	950	양측 12		서고시73호 (82.2.18)로 제1 종및 제4종미관 지구로 결정된 구간 550m제외
기정		자하문길	역사문화 미관지구 (제3종)	적선동107~ 청운동108	40,800	1,020	양측 20	서고328 (79.7.23)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자하문길	일반 미관지구	적선동107~ 청운동108	40,800	1,020	양측 20		
기정		의주로 통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제4종)	교북동1-12~ 무악동 산3-9 (전체:독립문~ 은평국교)	13,500 (전체: 98,400)	900 (전체: 3,280)	편측 15	서고73 (82.2.18)	
변경		의주로	일반 미관지구	교북동1-12~ 무악동 산3-9	13,500	900	편측 15		종로구 구간 900m

III.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내 미관지구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공람공고 하였기
-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IV.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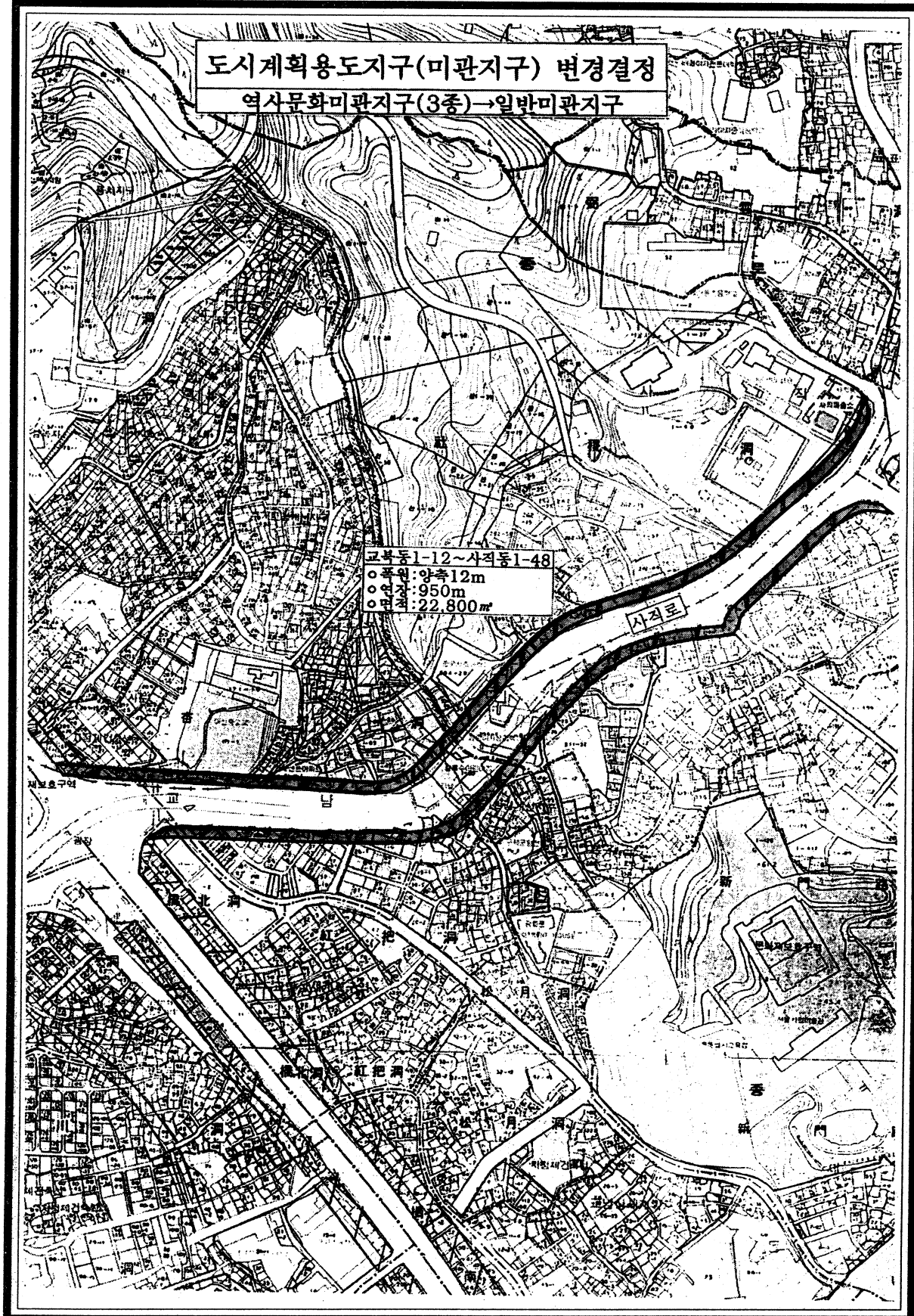
1.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연번	안 건 명(공람기간)	주 민 의 견	비고
1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변경결정(안) (2001.3.13~3.27)	의견 없음	
2	(서울시도시계획과)	○ 자하문길 주변은 최고고도지구(16~20m)로 건축높이가 제한되어 있어 일반미관지구로의 변경으로 인한 실익이 없고 경복궁이 인접한 것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해 현재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붙임 : 위치도 1식.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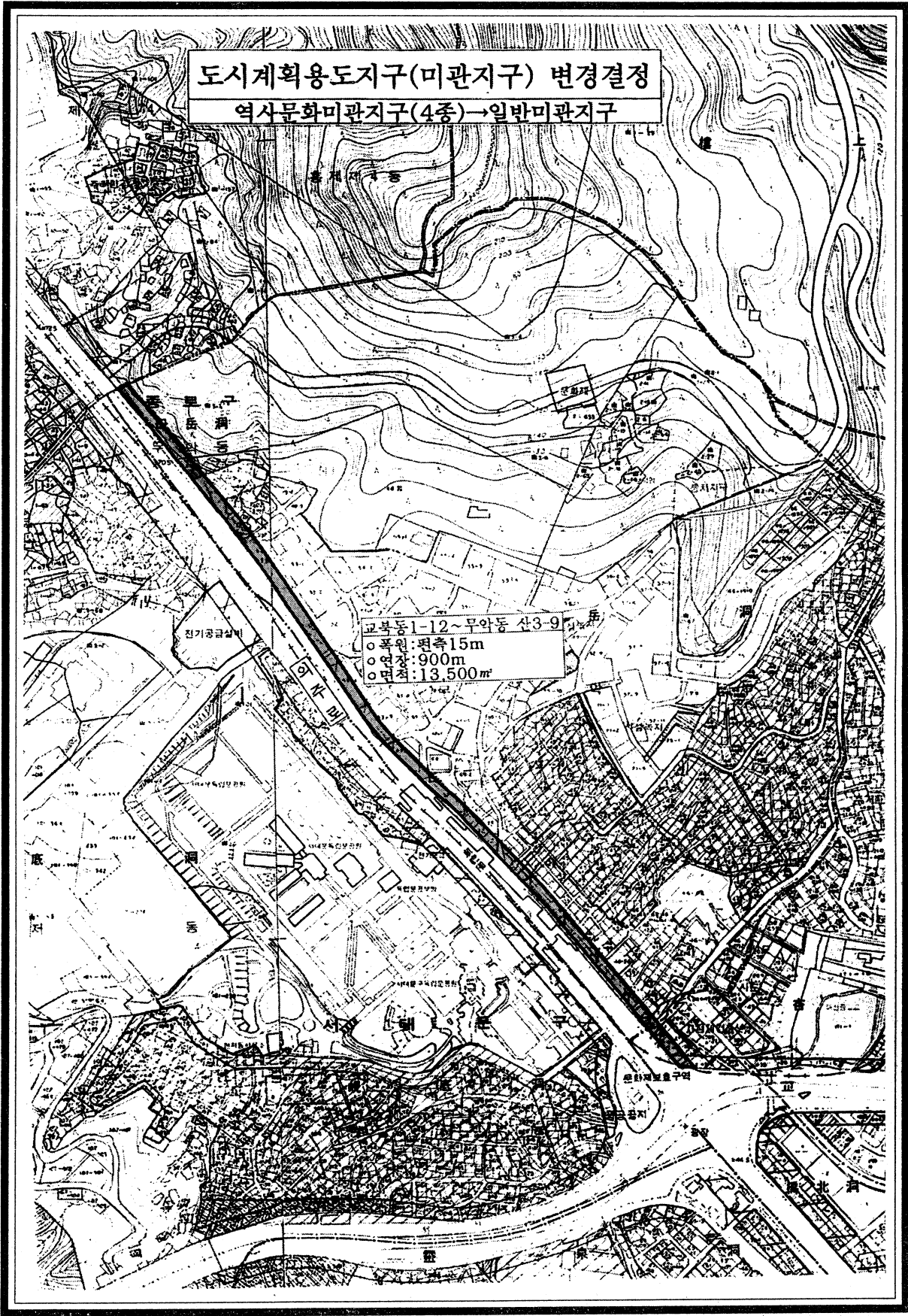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역사문화미관지구(3종)→일반미관지구

교북동1-12~사직동1-48
○ 폭원: 양측 12m
○ 연차: 950m
○ 면적: 22,800㎡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역사문화미관지구(4종)→일반미관지구

교북동1-12~무악동 산3-9
○폭원:평축15m
○연장:900m
○면적:13,500㎡



2. 청진구역 도심재개발 구역변경(안) 의견청취

1. 안건명 : 청진구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안)

2. 청진구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안) 조서

가. 구역면적변경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m ²)			비고
			당초	증감	변경	
변경	청진구역	종로구 청진동 166번지 일대	77,831.2	감69,108.2	8,723	구역경계 조정

나. 공공시설변경결정조서

(1) 도로(변경)결정조서

구분	내용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변경내용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당초	중로	2	1	15m	일반도로, 지하도로	집산 도로	216	종로1가동 23-1번지	청진동 203-3번지	폐지
당초	중로	2	2	15m	일반도로, 지하도로	집산 도로	234	종로1가동 39-4번지	청진동 208-1번지	폐지
당초	중로	2	3	15m	일반도로, 지하도로	집산 도로	111	청진동 258-1번지	청진동 138-1번지	폐지
당초	중로	2	4	15m	일반도로, 지하도로	집산 도로	90	청진동 88번지	청진동 71번지	폐지
당초	소로	2	1	8m	보행자전용도로 지하도로	특수 도로	192	종로1가동 48-5번지	청진동 54-3번지	폐지
당초	중로	3	1	12m	보행자전용도로 지하도로	특수 도로	93	청진동 183-1번지	청진동 191-1번지	폐지
당초	중로	3	2	12m	보행자전용도로 지하도로	특수 도로	108	청진동 19번지	청진동 59-1번지	폐지
당초	소로	2	2	8m	보행자전용도로 지하도로	특수 도로	53	청진동 244번지	청진동 238-1번지	폐지

(2) 광장(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의 구분	위 치	면적(m ²)	증감(m ²)	변경내용
당초	광 장	미관광장	공평동 100-19번지일대	1,085	-	폐지

(3) 공원(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의 구분	위 치	면적(m ²)	증감(m ²)	비 고
당초	공 원	근린공원	청진동 177-1번지일대	3,341	-	
변경	“	“	청진동 174-2번지일대	1,280	감2,061	

다. 지구분할계획 변경결정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조서

단위: m², (%), 층

구분	획지의 구분	위 치	획지 면적	건축 구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층수 (높이m)	지하 층수	용도 구성	비고
계			57,015		-	-	-	-	-	
당초	1	청진동 235-1번지일대	3,645	신규 건축	1,822이하 (50이하)	29,160이하 (800이하)	21이하 (86이하)	-	업무,판매, 근린,주거	
	2	청진동 249번지일대	3,056	신규 건축	1,528이하 (50이하)	24,448이하 (800이하)	24이하 (100이하)	-	업무,판매, 근린,주거	
	3	청진동 297번지일대	4,092	신규 건축	2,046이하 (50이하)	32,736이하 (800이하)	24이하 (100이하)	-	업무,판매, 근린,주거	
	4	청진동 205번지일대	2,429	신규 건축	1,214이하 (50이하)	19,432이하 (800이하)	21이하 (86이하)	-	업무,판매, 근린,주거	
	5	청진동 188번지일대	3,028	신규 건축	1,514이하 (50이하)	24,224이하 (800이하)	21이하 (86이하)	-	업무,판매, 근린,주거	
	6	청진동 166번지일대	6,783.4	신규 건축	(54.9이하)	101,700이하 (800이하)	20이하 (90이하)	7	업무	
	7	청진동 136번지일대	1,636	완료 건물	712 (44)	8,196 (501)	12 (-)	3	업무시설 (근린)	
	8	청진동 149번지일대	3,331	신규 건축	1,665이하 (50이하)	26,648이하 (800이하)	24이하 (100이하)	-	판매,업무, 근린,주거	
	9	청진동 13번지일대	2,419	신규 건축	1,210이하 (50이하)	19,352이하 (800이하)	21이하 (86이하)	-	업무,판매 근린,주거	
	10	청진동 30번지일대	2,005	신규 건축	1,003이하 (50이하)	16,040이하 (800이하)	18이하 (74이하)	-	근린,업무, 주거	
	11	청진동 60번지일대	1,531	신규 건축	766이하 (50이하)	12,248이하 (800이하)	18이하 (74이하)	-	근린,업무 판매,위락	
	12	청진동24-5번 지일대	1,594	신규 건축	797이하 (50이하)	12,752이하 (800이하)	20이하 (82이하)	-	근린,업무 판매,위락	
	13	청진동68-3번 지일대	1,733	신규 건축	867이하 (50이하)	13,864이하 (800이하)	20이하 (82이하)	-	근린,업무 판매,위락	
	14	청진동 92번지일대	1,650	신규 건축	825이하 (50이하)	13,200이하 (800이하)	20이하 (82이하)	-	숙박,근린	
	15	청진동 99번지일대	1,146	신규 건축	573이하 (50이하)	9,168이하 (800이하)	20이하 (82이하)	-	근린,업무 판매,위락	

구분	획지의 구분	위치	획지 면적	건축 구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층수 (높이)	지하 층수	용도 구성	비고
당초	16	청진동 123번지일대	4,270	신규 건축	2,135이하 (50이하)	34,160이하 (800이하)	24이하 (100이하)	-	판매,업무 근린,주거	
	17	공평동 139번지일대	1,986	신규 건축	993이하 (50이하)	15,888이하 (800이하)	18이하 (74이하)	-	근린,업무 판매,위락	
	18	공평동 129번지일대	1,195	신규 건축	598이하 (50이하)	9,560이하 (800이하)	18이하 (74이하)	-	근린,업무 판매,위락	
	19	청진동 100번지일대	9,485.6	완료 건물	3,716 (39)	50,690 (534)	22 (-)	4	업무	
변경		청진동 166번지일대	7,443	신규 건축	(54.9이하)	101,700이하 (800이하)	20이하 (90이하)	7	업무	

라 시행지구에 관한 계획 변경결정 조서 (지상)

단위 : m²

구분	재개발 구역명	시행 지구명	위치	면적	사업계획내역		비고
					획지면적	공공시설면적	
당초	청진구역	1	청진동235-1번지일대	4,242.3	3,645	597.3	
	청진구역	2	청진동249번지일대	3,830.3	3,056	774.3	
	청진구역	3	청진동297번지일대	5,169.4	4,092	1,077.4	
	청진구역	4	청진동205번지일대	2,977.5	2,429	548.5	
	청진구역	5	청진동188번지일대	3,571.0	3,028	543.0	
	청진구역	6	청진동166번지일대	8,655.5	6,783.4	1,872.1	
	청진구역	7	청진동136번지일대	1,636.0	1,636	-	
	청진구역	8	청진동149번지일대	4,179.7	3,331	848.7	
	청진구역	9	청진동13번지일대	3,020.0	2,419	601.0	
	청진구역	10	청진동30번지일대	2,727.7	2,005	722.7	
	청진구역	11	청진동60번지일대	1,881.0	1,531	350.0	
	청진구역	12	청진동24-5번지일대	1,936.1	1,594	342.1	
	청진구역	13	청진동68-3번지일대	2,199.1	1,733	466.1	
	청진구역	14	청진동92번지일대	1,986.2	1,650	336.2	
	청진구역	15	청진동99번지일대	1,422.4	1,146	276.4	
	청진구역	16	청진동123번지일대	5,190.6	4,270	920.6	
	청진구역	17	공평동139번지일대	2,709.5	1,986	723.5	
	청진구역	18	청진동129번지일대	1,506.9	1,195	311.9	
	청진구역	19	공평동100번지일대	9,485.6	9,485.6	-	
변경	청진구역		청진동166번지일대	8,723	7,443	1,280	

(지하)

단위 : m²

구분	재개발 구역명	시 행 지구명	위치	면적	사업계획내역		변경 내용
					획지면적	공공시설면적	
당초	청진구역	1	청진동235-1번지일대	5,158.6	3,645	1,513.6	폐지
당초	청진구역	2	청진동249번지일대	4,325.0	3,056	1,269.0	폐지
당초	청진구역	3	청진동297번지일대	5,791.2	4,092	1,699.2	폐지
당초	청진구역	4	청진동205번지일대	3,437.7	2,429	1,008.7	폐지
당초	청진구역	5	청진동188번지일대	4,285.4	3,028	1,257.4	폐지
당초	청진구역	6	청진동166번지일대	9,635.8	6,783.4	2,852.4	폐지
당초	청진구역	7	청진동136번지일대	1,636.0	1,636	-	폐지
당초	청진구역	8	청진동149번지일대	4,714.2	3,331	1,383.2	폐지
당초	청진구역	9	청진동13번지일대	3,423.5	2,419	1,004.5	폐지
당초	청진구역	10	청진동30번지일대	2,837.6	2,005	832.6	폐지
당초	청진구역	11	청진동60번지일대	2,166.8	1,531	635.8	폐지
당초	청진구역	12	청진동24-5번지일대	2,255.9	1,594	661.9	폐지
당초	청진구역	13	청진동68-3번지일대	2,452.6	1,733	719.6	폐지
당초	청진구역	14	청진동92번지일대	2,335.2	1,650	685.2	폐지
당초	청진구역	15	청진동99번지일대	1,621.9	1,146	475.9	폐지
당초	청진구역	16	청진동123번지일대	6,043.1	4,270	1,773.1	폐지
당초	청진구역	17	공평동139번지일대	2,810.7	1,986	824.7	폐지
당초	청진구역	18	공평동129번지일대	1,691.2	1,195	496.2	폐지
당초	청진구역	19	공평동100번지일대	9,485.6	9,485.6	-	폐지

3. 입안사유

도심재개발 청진구역은 주변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소식당가가 대다수 분포하고 있고 청진동 해장국집 피맛골등이 위치하고 있어 나름대로 도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대다수 주민들이 전통음식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에 따라 개별 신축하기를 원하고 있음.

4. 공람공고

가. 공고일 : 2001. 3. 30

나. 공람기간 : 2001. 3. 30 ~ 4. 13(14일간)

다. 게재신문 : 전국매일, 한국경제

라. 주민의견 접수내용 : 별첨

3.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5
----------	-----

제출일자 : 2001. 4. .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의 감면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에서 85제곱미터이하로 범위 확대(안 제8조제3호)

3. 개정근거

○서울특별시 세정13415-150(2001. 2. 7)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생략)</p> <p>1. ~ 2.(생략)</p> <p>3. <u>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u></p>	<p>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p> <p>1. ~ 2.(현행과 같음)</p> <p>3. <u>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u> --- ----- ----- -----</p>

4.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6
----------	-----

제출년월일 : 2001. 4. .
제 출 자 : 종 로 구 청 장

1. 개정사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개정('99.9.9)으로 모든 입찰에 있어서 "적격심사낙찰제"로 전면 전환됨과 동시에, 2000.9.14부터 "소액공사입찰제"(3천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 실시)를 실시함에 따라 입찰업무 처리시간 증가등으로 인한 인건비 등 원가상승 추가요인 발생
- 수수료는 원가분석과 현실화율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재원확충 방안으로 수수료를 과다 인상함으로써 자치구별 수수료 불균형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2. 주요내용

- 입찰참가수수료 인상

종 류	단위	현행수수료	조정(안)	비 고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1건	1,000원	5,000원	550→1,000원(2000.1.12)

3.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회계13300-26(2001.1.4):회계분야 수수료 징수금액 조정권고
 - 서울시에서 2000.12.30일자로 수입증지수수료 조례중 회계분야의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면서 자치구에서도 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권고안 시달
 - 권고내용 : 5,000원으로 조정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중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란의 (7)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액 1,000원”를 “수수료액 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현행				개정안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 (6) (생략) (7)입찰참가신청 (8)(생략)	1건	1,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 (6) (현행과 같음) (7)입찰참가신청 (8)(현행과 같음)	1건	5,000원	